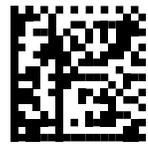




North Carolina Department of Commerce  
 Division of Employment Security  
 Unemployment Insurance



999999

과다지급액 결정

우송일: 2017년 2월 24일

JACK T HOOVER  
 700 WADE AVE  
 UNIT 32  
 RALEIGH, NC 27605-  
 1154

청구인 ID: 1234567

비사기성 과다지급액 결정

청구인 ID: 1234567

고용보장국(DES)은 귀하의 실업급여 청구에 대해 감사를 실시한 후 귀하가 <MM/DD/YYYY> □ 종료된 주간 동안 귀하의 급여 수표 #<xxxxxxx>를 수령하지 않았다고 진술하는 선서진술서에 서명하였다고 판단했습니다. 이에 따라 \$ <xxx.xx>의 수표를 귀하에게 재발행하였습니다. 그러나 귀하는 <MM/DD/YYYY>에 종료된 주간 동안 귀하의 급여를 수령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.

급여 재발행으로 인해 \$ <xxx.xx>만큼 급여가 과다지급되었습니다.

과다지급 잔액은 N.C. Gen. Stat. § 96-18(g)(2)에 따라 DES 에 상환해야 합니다. 상환은 동 국 웹사이트 [des.nc.gov](http://des.nc.gov)에서 Visa 또는 MasterCard 로 결제하거나 아래 부서에 수표나 우편환으로 송부할 수 있습니다:

NC DIVISION OF EMPLOYMENT SECURITY

각 수표 또는 우편환에 귀하의 이름과 사회보장번호 마지막 네 자리를 입력한 후 아래 주소로 우송하십시오:

NC DIVISION OF EMPLOYMENT SECURITY  
 BENEFITS INTEGRITY SECTION  
 POST OFFICE BOX 25903  
 RALEIGH, NORTH CAROLINA 27611

귀하의 과다지급 잔액을 상환하기 위해 DES 와 지불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. 귀하는 지불 계약에 대한 지원은 동 국의 급여성실과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.

항소권: 본 결정은 상기 항소권 만료일까지 항소장이 제출되지 않을 경우 최종 효력을 갖습니다. 본 결정의 항소에 대한 정보는 동봉되는 팸플릿에 포함됩니다.

정보 요청에 신속하고 정확하게 답변하여 비 사기 방지에 도움을 주십시오.

**North Carolina Department of Commerce**  
**Division of Employment Security**  
**Unemployment Insurance**



999999

**과다지급액의 회수**

N.C. Gen. Stat. § 96-18(g)(3)에 따라 동 국은 아래 절차에 따라 과다지급액을 추심할 수 있습니다.

**세금 상계**

동 국은 연방 세금 환급, 주세 환급, 복권 당첨금 또는 급여 압류를 통해 추심할 수 있습니다.

**급여 상계**

과다지급액은 향후 귀하에 지불되는 급여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. 과다지급액이 변제되거나 귀하의 권리가 소진되는 시점 중 이른 시점까지 월 급여액 중 최대 100 퍼센트를 공제할 수 있습니다.

**민사소송**

과다지급액은 동 국 명의의 민사소송으로 추심할 수 있으며 해당 소송 비용은 귀하에게 청구됩니다.

**재산 유치권**

통지 이후 30 일 안에 과다지급액이 상환되지 않을 경우, 동 국은 귀하가 거주하거나 재산을 보유한 카운티 법원 서기에게 이를 증명할 수 있으며 귀하가 소유한 재산에 대한 판결은 소송사건표에 기재됩니다.

**과다지급의 유보**

N.C. Gen. Stat. § 96-4(w)의 규정대로 동 국은 타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사기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과다지급액 전액 또는 일부를 탕감할 수 있습니다. 귀하는 1 회에 한하여 본 과다지급의 유보를 요청하는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. 귀하의 요청은 서면으로 작성하여 그 근거를 명시하고 귀하의 요청을 입증하는 증빙 또는 서류 일체를 동봉해야 합니다. 동국은 과다지급을 초래한 판정에 대해 항소가 진행되는 경우에는 신청을 심의하지 않습니다. 유보가 요청되는 경우에는 항소 제출권이 포기됩니다. 신청의 내용 및 제출 절차는 DES 규칙 04 NCAC 24B .0701, .0702 및 .0703 을 준용하며, 이는 동 국의 웹사이트 [des.nc.gov](http://des.nc.gov)에서 다운로드받을 수 있습니다.

주 종료일	신고 소득	고용주 신고 소득	고용주 이름 또는 사유	지불 급여	실제 지불 예정 급여	과다지급액
01/01/2001	\$0.00	\$0.00	employersName	\$0.00	\$0.00	\$0.00
합계				\$0.00	\$0.00	\$0.00

